

17_영업비밀 유출 시 민형사상 조치 전략

#1

이번 시간에는 영업비밀 침해 시 민형사상 조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조치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형사적 조치는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형사상 처벌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2

※ 영업비밀이 외국으로 유출되었을 때 형사처벌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다양하지만, 가장 심각한 손해를 일으키는 것은 국내 중요 기술이나 자산을 해외 기업에 유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적 차원에서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으며,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런 유형의 영업비밀 유출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내 기술 및 자산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중대한 법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 영업비밀 유출 시 벌칙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4

※ 유출된 가치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5억 원의 벌금이 유출된 기술의 실제 가치에 비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위반자가 영업비밀을 통해 얻은 재산적 이득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득의 2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외국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2억 원을 보상으로 받았다고 가정할 때, 이 사람에게는 2억 원의 2배인 4억 원에서 10배인 20억 원 사이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2억 원을 받고 최대 20억 원까지 벌금으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벌금은 국가에 의해 징수되며, 이는 영업비밀 침해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조치입니다.

#5

※ 영업비밀이 국내에 유출되었을 때의 형사처벌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또한,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유출 행위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

※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7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의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한 '영업비밀침해행위'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포함합니다.

-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제3자에게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이외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의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 절취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와 이를 이용하는 행위

#8

※ 영업비밀과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관계

업무상배임죄는 회사에서 업무를 맡은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 직원이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한 배신행위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회사의 자료를 유출하거나 사용한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9

※ 「형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개성, 경제적 가치, 비밀유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직원이 유출한 정보가 반드시 영업비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행위가 회사를 배신하고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0

※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위한 요건 - '영업상 주요한 자산'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영업비밀 등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노출시키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개성, 경제적 가치, 비밀 유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관점에서, 유출된 정보가 반드시 영업비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무단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서는 안 되며, 이를 얻기 위해서는 보유자의 승인 없이 접근할 수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정보가 경쟁사에게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정도로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11

- ※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세 가지
 1.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보유자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3. 이 정보로 경쟁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간주되기 위한 요건이며, 이러한 요건을 고려하면 영업비밀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등과 유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죄로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2

- ※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위한 고의성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데는 해당 행위의 실시뿐만 아니라 고의로 그것을 계획하고 의도하는 고의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주관적인 요건 중 하나로 임무를 위반하고 이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이 이익을 얻으며 본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그러한 행위를 의도하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도는 필연적으로 의도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내가 그러한 행위를 하면 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을 '미필적 인식' 또는 '미필적 고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13

- ※ 업무상배임죄 고의 여부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여부를 평가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접 증거를 통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고의와 관련이 있는 간접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어떤 요소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증거로 간주될 수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

※ 업무상배임죄의 처벌

영업비밀 침해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행위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속한다면 영업비밀과는 관계없이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간접적으로 배임의 고의가 확인된다면, 회사의 자료 유출 행위 역시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지금까지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형사적 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사적 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

※ 민형사상 조치의 차이점

형사적 조치는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사적 조치는 직접적인 행위를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 침해를 중단하라.”,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삼가라.”,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와 같은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조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측면은 특정한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17

※ 「부정경쟁방지법」 중 민사적 조치 관한 사항

-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제10조 제1항)
- 침해 물건 폐기·제거 등 청구권(제10조 제2항)
-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제11조)

-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청구권(제12조)

#18

※ 손해배상 청구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영업비밀을 보유한 회사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이 회사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의로 손해액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 손해의 성격
-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19

※ 위약금과 위약벌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거나 전직금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러한 계약서에서는 위반 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약행위에 대한 징계를 위해 위약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어기는 행위에 대한 징계를 취하려는 취지에서 설정됩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은 구분되며, 위약벌은 위약금처럼 감액되지 않습니다. 또한, 너무 과도한 위약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상황에 맞게 일부 무효화하거나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과 위약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0

※ 손해액 추정 방법

침해자가 판매한 전체 수량을 손해액으로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판매한 것은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해야 하며, 침해행위 이외에 피해자의 사정으로 인해 생산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판매되지 못한 수량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액을 계산할 때 침해자가 실제 판매한 총 매출액이 아니라 원가 등을 제외한 실제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원가 내역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1

※ 영업비밀 침해 소멸시효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도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소멸시효는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이러한 소멸시효는 「민법」에서 정한 불법 행위 소멸시효(「민법」 제766조)와 동일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